

#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90,814,447	26,724,433
일반회계	747,486,546	22,424,596
특별회계	143,327,901	4,299,837
공기업특별회계	42,666,740	1,280,00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070,198	302,10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596,542	977,896
기타특별회계	100,661,161	3,019,83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352,902	640,587
주택사업특별회계	3,133,948	94,01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916,265	117,4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40,000	31,2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35,147	1,054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034,104	61,023
교통사업특별회계	6,295,803	188,874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62,852,992	1,885,59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02,75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